

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전문공보담당자 형사 1부장 신승우
전화 061-280-4308 / 팩스 061-280-4520

보도자료
2021. 1. 18.(월)

자료문의 : 형사1부장실
전화번호 : 061-280-4308

제 목 전남교육청 납품 비리 사건 수사결과

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

- 피고인, 죄명, 공소사실 요지, 공소제기 일시, 공소제기 방식, 수사경위, 수사상황(제11조 제1항)
- 제7조 및 제8조의 공개금지정보 중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가 공개 의결한 내용(제11조 제2항 제3호, 제12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1호 다목)

● 목포지청(지청장 유종완)은 전남교육청 납품 비리 사건을 수사하여, 뇌물을 수수한 전남교육청 공무원 5명(2명 구속), 뇌물 제공 업자 5명, 알선 브로커 5명(1명 구속), 조달 계약과 달리 저가 물품을 납품한 업자 2명, 브로커의 청탁으로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 4명 등 총 21명을 기소하였음

I 주요 피고인 및 공소사실 요지

- A○○(50세, 전남교육청 팀장) 외 전남교육청 공무원 3명
 - '17. 9.~12, 관급물품 알선 브로커 C○○ 외 2명으로부터 롤스크린 등 관내 학교 물품 납품 대가로 합계 3,700만원 현금 수수 **【뇌물수수】**
- B○○(51세, 전남교육청 팀장) 외 1명
 - '18. 4.~7. 관급물품 알선 브로커 C○○으로부터 관내 학교 배수로 덮개 등 납품 대가로 3,800만원 금품 수수
 - '18. 10. C○○으로 하여금 B○○의 친구에게 1억원을 대여하도록 요구 하여 1억원 상당 금융이익 취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 C○○(49세, 전남 일대 관급물품 알선 브로커) 외 4명
 - '17. 9.~'18. 10. 위와 같이 관급물품 납품 대가로 A○○, B○○에게 금품 제공 **【뇌물공여】**
- D○○(54세, 전남교육청 산하 ㄱ교육지원청 과장) 외 전남교육청 공무원 3명
 - '18. 2.~4. 롤스크린 등 관급물품 알선 브로커 C○○의 청탁으로 물품 예산을 배정하여 각급 학교에 1억 679만원 납품 계약을 체결하게 함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 ※ 브로커의 청탁으로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을 청탁금지법위반죄로 기소한 첫 사례
- E○○(47세, 경기도 소재 관급물품 납품 업자) 외 1명
 - '17. 2.~'18. 8. 관내 학교에 조달계약과 달리 저가의 롤스크린을 납품 하여 조달청으로부터 28억 5,657만원 교부받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F○○(67세, 전남 일대 관급물품 알선 브로커) 외 4명
 - '16. 7.~'18. 12. 관내 학교에 E○○의 롤스크린 등을 알선해 준 대가로 납품 업자들로부터 8억 2,801만원 취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 ※ 자세한 처분 내역은 별첨 「피고인별 공소사실 요지 및 처분결과」 참조

II 수사 경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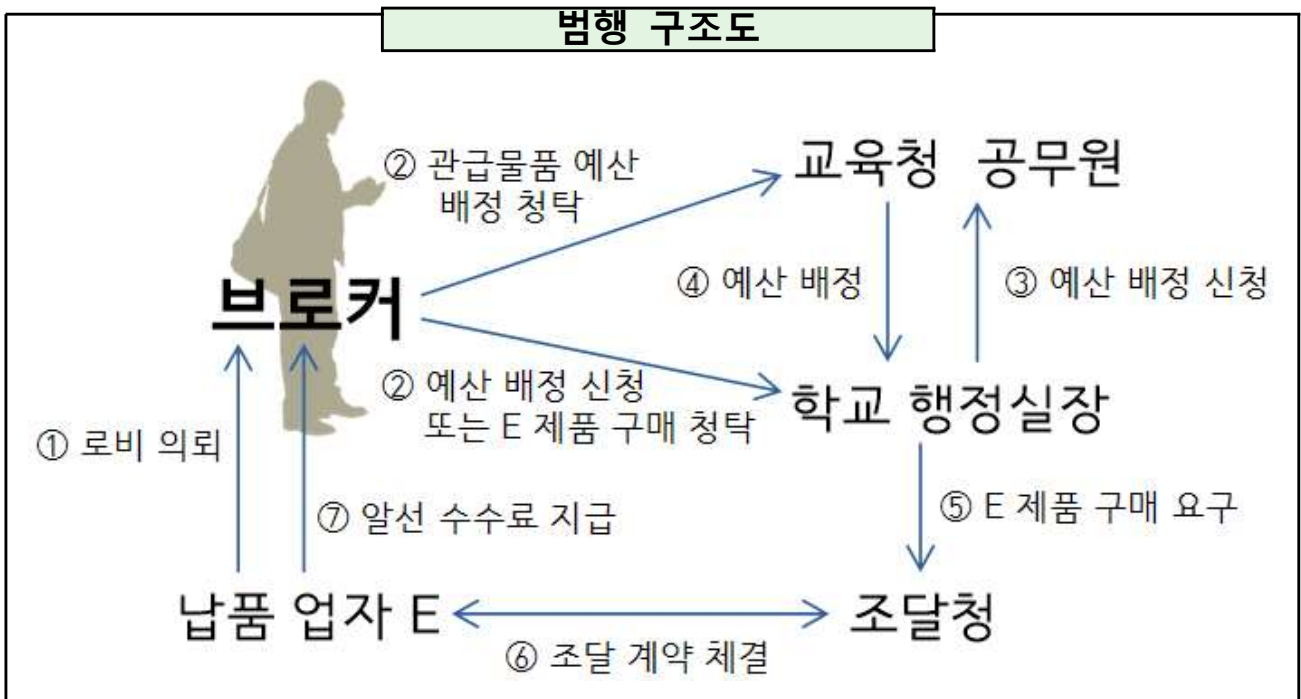
- '18. 11. 전남교육청 감사관, 전남지방경찰청에 수사의뢰
- '18. 11.~'20. 10. 목포지청 공직비리 담당 검사의 수사지휘로 전남 지방경찰청과 긴밀히 협조하여 수사 진행
- '20. 11.~'21. 1. 사건 송치 후 보완수사
- '20. 12. 23. 브로커 5명의 알선수재 금액 28억 1,868만원에 대한 기소전 추정보전명령 청구
- '20. 1. 15. 피고인 21명 기소 완료

III

이 사건의 의의

- 본 사건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공직비리 담당 검사가 수사지휘를 전담** 하여 **장기간 경찰과 긴밀히 협조**하여 수사를 진행한 사례임
- 본건 수사를 통해, 타지역 소재 납품 업자는 지역에서 수십년간 공무원들과 커넥션을 갖고 있는 알선 브로커에게 로비를 의뢰하고, 납품계약 체결시 계약금의 40~60% 상당의 수수료를 브로커에게 지급한 후, 브로커는 이 중 일부를 공무원에게 상납하는 구조가 관행화 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전남교육청에 관급 시스템에 대한 제도개선을 건의함

※ 납품 비리 관행 근절을 위해 브로커의 청탁에 따라 관급 계약을 체결한 공무원을 금품 수수가 인정되지 않음에도 청탁금지법위반죄로 의율하여 기소함



- 또한, 브로커가 취득한 **범죄수익 총액 28억원에 대하여 기소전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하여 범죄로 인한 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함
- 검찰은 전남교육청, 조달청 등 관계 기관에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음 ☑

[별첨] 피고인별 공소사실 요지 및 처분결과

가. 공무원이 알선 브로커의 금품을 수수한 사건

순번	피고인	직업	공소사실	처분결과
1	A○○	전남교육청 팀장	'17. 9.~12. 롤스크린 등 관급물품 알선 브로커 C○○, K○○, M○○으로부터 롤스크린 등 납품 대가로 합계 3,700만원 수수 【뇌물수수】	구속기소
2	G○○	전남교육청 과장	'20. 3.~4. 롤스크린 등 관급물품 알선 브로커 K○○, L○○, N○○으로부터 납품 대가로 1,300만원 수수 【뇌물수수】	구속기소
3	B○○	전남교육청 팀장	'18. 4.~7. B○○은 배수로 덮개 등 납품 대가로 알선 브로커 C○○으로부터 H○○의 계좌로 3,800만원을 전달받고, '18. 10. B○○의 요구로 C○○이 H○○에게 1억원을 대여하고 B○○은 이자를 지급받아 【특가범위반(뇌물수수)】	불구속기소
4	H○○	B○○의 친구		
5	I○○	교육지원청 팀장	'20. 3. K○○으로부터 롤스크린 납품 대가로 340만원 수수 【뇌물수수】	불구속기소
6	J○○	전남교육청 과장	'20. 3. K○○으로부터 현금 150만원 수수 【청탁금지법위반】	약식기소

나. 브로커가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건

순번	피고인	직업	공소사실	처분결과
1	C○○	관급물품 알선 브로커	'17. 10. 전남교육청 팀장 A○○에게 배수로 덮개 등 납품 대가로 1,500만원 교부 【뇌물공여】	불구속기소
			'18. 4.~7. 배수로 덮개 등 납품 대가로 전남교육청 팀장 B○○에게 B○○의 친구 H○○의 계좌로 3,800만원을 전달하고, '18. 10. B○○의 요구로 H○○에게 1억원을 대여하여 【뇌물공여】	

2	K○○	롤스크린 등 납품 업자	'17. 9. 전남교육청 팀장 A○○에게 롤스크린 납품 대가로 1,200만원 교부 【뇌물공여】	불구속기소
			20. 3. 전남교육청 과장 G○○에게 롤스크린 등 납품 대가로 400만원 교부 【뇌물공여】	
			'19. 12. 롤스크린 납품 대가로 ㄴ교육지원청 팀장 I○○에게 340만원, 과장에게 30만원 교부 【뇌물공여】	
			'20. 3. 롤스크린 납품 대가로 ㄷ도서관장 등에게 300만원 교부 【뇌물공여】	
			'20. 3. 전남교육청 과장 J○○에게 150만원 교부 【청탁금지법위반】	
3	L○○	관급물품 납품 업자	'20. 3. 전남교육청 과장 G○○에게 관급물품 예산 배정 대가로 500만원 교부 【뇌물공여】	불구속기소
4	M○○	관급물품 납품 업자	'17. 12. 전남교육청 팀장 A○○에게 관급물품 예산 배정 대가로 1,000만원 교부 【뇌물공여】	불구속기소
5	N○○	롤스크린 납품 업자	'20. 4. 전남교육청 과장 G○○에게 롤스크린 납품 대가로 400만원 교부 【뇌물공여】	약식기소

다. 공무원이 브로커의 청탁으로 예산 배정 등 업무를 수행한 사건

순번	피고인	직업	공소사실	처분결과
1	D○○	ㄱ교육지원청 과장	'18. 2.~4. 롤스크린 등 관급물품 알선 브로커 C○○의 청탁으로 예산을 배정하여 1억 679만원 납품 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청탁금지법위반】	약식기소
2	O○○	ㄴ교육지원청 과장	'18. 2.~4. C○○의 청탁으로 예산을 배정하여 9,757만원 납품 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청탁금지법위반】	약식기소

3	P○○	르교육지원청 과장	'18. 2.~4. 롤스크린 등 관급물품 알선 브로커 S○○의 청탁으로 예산을 배 정하여 1억 3,500만원 납품 계약을 체 결하게 하여 【청탁금지법위반】	약식기소
4	Q○○	고등학교 실장	'18. 2.~6. C○○의 청탁으로 고등 학교에 8,304만원 납품 계약 체결 【청탁 금지법위반】	약식기소

라. 납품 업자가 조달 계약과 달리 저가 물품을 납품한 사건

순번	피고인	직업	공소사실	처분결과
1	E○○	롤스크린 납품 업자	'17. 2.~'18. 8. 조달계약과 달리 저가의 롤스크린을 납품하여 조달청으로부터 28억 5,657만원을 교부받아 【특경법위반 (사기)】	불구속기소
2	R○○	롤스크린 납품 업자		

마. 브로커가 관급물품의 납품을 알선하고 수수료를 취득한 사건

순번	피고인	직업	공소사실	처분결과
1	F○○	관급물품 알선 브로커	'16. 7.~'18. 12. 관내 학교에 E○○의 롤스크린 등 관급 물품을 납품해 준 대가로 8억 2,801만원 수수 【특가법위반 (알선수재)】	구속기소
2	S○○	관급물품 알선 브로커	'17. 2.~'18. 9. 관내 학교에 E○○의 롤스크린을 납품해 준 대가로 12억 5,942만원 수수 【특가법위반(알선수재)】	불구속기소
3	T○○	관급물품 알선 브로커	'18. 5.~11. 관내 학교에 E○○의 롤스 스크린을 납품해 준 대가로 9,668만원 수수 【특가법위반(알선수재)】	불구속기소

4	U○○	관급물품 알선 브로커	'18. 6.~7. 관내 학교에 E○○의 손소 독기를 납품해 준 대가로 4,139만원 수수 【특가법위반(알선수재)】	불구속기소
5	C○○	관급물품 알선 브로커	'15. 5.~'18. 5. 관내 학교에 E○○의 롤스크린을 납품해 준 대가로 5억 9,318만원 수수 【특가법위반(알선수재)】	불구속기소

바. 브로커가 납품 견적을 부풀려 차액을 편취한 사건

순번	피고인	직업	공소사실	처분결과
1	C○○	관급물품 알선 브로커	15. 5.~'16. 8. 각급 학교에 납품하는 롤스크린 견적을 부풀려 차액 924만원 편취 【사기】	불구속기소
2	E○○	롤스크린 납품 업자		